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3. 4. 3.(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신종갑 의원 외 8명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신종갑 의원 외 8명
- 제안일 : 2023. 3. 22.
- 회부일 : 2023. 3. 23. (의안번호 : 23-26)

2. 제안이유

-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5조)
- 구민참여단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 「건강가정 기본법」 제3조(정의),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 「양성평등 기본법」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3. 3. 17 ~ '23. 3. 22(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북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임.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추진을
 - 안 제6조에서는 구민참여단 모집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정취지와 필요성
 - 가사(家事)란 청소, 세탁, 육아 등과 같은 가정의 일상적인 신체적·정신적인 일을 말하는 것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 유지에 큰 부담감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음.

-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사회조사’ 결과 스트레스를 받는 사유에 대한 문항 중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2018년에 비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에 대한 스트레스는 2018년 40.8%에서 2020년 41%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나타난 사회현상으로, 이에 따라 가사의 중요성 및 가치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요가 동시에 높아지게 되었음.

[2020년 사회조사 결과 ‘스트레스 받는다’ 문항에 대한 답변]

(단위:%)

구 분	직장	일상	학교	가정
2018년	71.8	54.4	49.6	40.8
2020년	68.0	50.5	35.2	41.0
증감률	△3.8	△3.9	△14.4	0.2

※ 출처 : 통계청

- 본 조례안은 가사 스트레스를 개인적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여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 가정, 정책 등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